

고 발 장

고 발 인

1. 안 진 결¹⁾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2. 김 남 회²⁾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피고발인

1. 박 근 혜 (대통령)
2. 최 순 실³⁾ (대통령의 이른 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자,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3. 김 기 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4. 차 광 열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5. 김 상 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전 차움의원 의사)
6. 김 영 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1)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개명 후 이름 최서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업무상 횡령죄, 직권 남용죄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최순실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위반죄, 피고발인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피고발인 차광열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공여죄 및 의료법 위반죄로, 피고발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각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에 들어가면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측근인 피고발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뇌물 수수 및 국정 농단, 온갖 인사 개입 등을 통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추가적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피고발인 최순실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될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피고발인 차광열이 총괄회장으로 있는 차병원그룹 산하 차움의원⁴⁾에서 회원

4) 피고발인 차광열이 총괄회장으로 있는 차병원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원제 의원으로 회원 입회보증금 1억7000만원과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안티에이징 센터입니다.

도 아니면서 가명⁵⁾으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기술(노화 방지 기술)을 여러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발인 차광열 등이 청구하는 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위법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피고발인 차광열이 총괄회장으로 있는 차병원그룹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 및 상용화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제도 규제를 철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2016.11.19.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에서 방송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위법한 기술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발인 김상만 등 특정인들을 자문의로 두고, 심지어 태반주사 등의 미용 기술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을 꺼려하는 기존 주치의를 교체하고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성형 기술에 필요한 각종 약제들을 청와대 의무실에 대량으로 구입, 비치하였으며, 나아가 비아그라, 팔팔정과 같은 약제들까지도 구입하도록 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제들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약제들이 아니라 성형이나 미용과 관련한 것으로 동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으로 불법 사용된 의혹도 있습니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최소한의 분별도 없이,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외모 관리를 위하여 사유화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직권남용과 횡령을 저지르고, 전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 정책 규제 철폐 등의 조치를 하였습

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및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피고발인 김기춘 역시 줄기세포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기술을 받은 시점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직후로 사후수뢰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차광열은 국내 굴지의 의료재단 및 바이오 회사를 운영하는 차병원그룹의 총괄회장으로 실질 사주 겸 대표이며 자신이 영위하는 의료업 및 바이오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및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측근인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무상으로 줄기세포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그 대가로 각종 이익과 입법, 제도상의 편의를 받은 자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발인 김영재,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형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와 지원을 받은 자들로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중대한 사항들이고, 대통령의 직을 나락에 빠뜨린 사안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책임의 범위와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 공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

5) 인기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자 주인공 이름인 ‘길라임’ 명칭을 이용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합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박근혜 및 피고발인 최순실의 2010년 ‘자가배양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1)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6년 11월 19일 방영분, ‘대통령의 시크릿’ 편)에 나온 ○○○바이오 관계자의 내부제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발인 박근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참고자료 1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통령의 시크릿’ 편 프리뷰). 해당 시술은, 체외에서 배양된 자신의 줄기세포를 몸에 넣는 ‘자가배양 줄기세포 주사’로, 미용이나 원기 회복 등 목적으로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여당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수백만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던 비용조차 받지 않고 시술을 해줬다면서 이는 당시 불법이었던 해당 시술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인 2009년 9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5선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있던 14년간 15개 법안만 대표발의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대표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제대혈 치료,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이었는데, 이 법은 2010년 2월에 통과되었고, 통과후 ‘메디포스트’ ‘이노셀’ ‘차바이오’ 등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이 가격이 폭등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2010년 9월,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 참석, 이례적으로 긴 축사를 통해, 국가 제대혈 관리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국민들의 삶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법 제정에 이어 하위법령이 갖춰지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학계는 체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산업계는 줄기세포 관련 사업도 활성화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⁶⁾. 제대혈은 관련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팽창하여 상업적으로 난립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⁷⁾.

4) 또한 박근혜 의원을 ○○○바이오라는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하여 준 자가 피고발인 최순실이라는 점이 위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에 나온 제보자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는 바(참고자료 1 참조), 피고발인 최순실 역시 피고발인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6) 연합뉴스 2010. 9. 15.자 보도 “속도내는 박근혜 행보... ‘정치의 계절’ 오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57905>

7) 제대혈은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로 나뉘는데, 한국의 경우 가족제대혈이 91%로 압도적으로 많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증제대혈은행도 이식, 공급 비용을 10배 이상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2013년 10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국정감사 자료 참조).

5) 소결 :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및 피고발인 최순실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발인 박근혜, 피고발인 최순실이 줄기세포 관련 업체의 입법 및 향후 사업시의 로비 목적으로 제공된 최소한 1회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줄기세포 주사를 무상으로 시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사후 수뢰를 포함)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피고발인 최순실은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위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박근혜, 피고발인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차음의원에서의 무료시술 관련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최순실과 고발의 최순득 자매는 최순실이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서 2010년 차음의원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2016년 6월까지 차음의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차음병원은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과 별도의 고액 연회비를 내야하는 회원제 시설로 프리미엄 건강검진, 안티에이징 등 고가의 시술을 하는 의원입니다.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전인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차음의원을 방문하여, ‘길라임’ 등의 가명으로 줄기세포 앰플 제품을 투여하면서 흡수를 시키는 방식의 시술과 미용 목적의 태반 주사와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같은 주사제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능의학적 처치가 주된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외에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최순득의 딸 장시호,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희가 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에 따르면, 차음의원의 이동모 원장은 박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비용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과 연회비를 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회원이 아닌데 연회비를 왜 내겠나. 최씨 자매도 모두 회원이 아니었다. 여기는 병원이다. 병원은 돈이 없어도 와서 진료해달라고 하면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상 환자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참조)

2)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차광열의 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등 성립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인 피고발인 차광열이 집권이 예상되는 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대선후보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피고발인 최순실 등에게 자신의 소유인 위 의원에서 회원이 아닌데도 사실상 무상으로 고가의 미용시술을 제공받도록 한 것은 로비를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형법 제133조에 따른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박근혜를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88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발표한 각종 의료관련 대책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차병원 그룹이었다

는 건 단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의원이자 대선후보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차병원그룹 산하 차음의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용시술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최순실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의 책임 성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 혐의를 엄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및 관련 범죄행위를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대통령 취임 후 피고발인 박근혜의 차음의원 관련 특혜 제공(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1)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위 방송 및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⁸⁾.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냉동보존된 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9. 차병원그룹 산하 바이오 복합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 업무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⁹⁾. 이 연구소는 2016년 4월 복지부·미래부 등이 참석한 바이오 현장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건물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¹⁰⁾.

3) 2016년 5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때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완화’가 규제 완화책 중 첫째로 꼽혔으며,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중인 알츠하이머¹¹⁾,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을 꼭 적어서 임상3상 면제 대상으로 언급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바이오 7대 강국 도약”).

4) 중국 방문 경제 사절단에 차병원 이사장이 포함되었으며, 2016년에는 연구중심 병원으로 차병원이 선정되어 192억 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차병원 계열 차의과학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해 동결난자 500개와 미성숙 비동결난자 100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¹²⁾. 비동결난자 허용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참고자료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7년 만에 승인”).

9) jtbc 2016. 11. 9.자 방송 “주사제를 대신... 대통령 주치의 뇌두고 최순실이 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2587&fcode=PR10000403
 10) 서울신문 2016. 1. 19.자 보도 “차바이오컴플렉스’서 대통령 업무보고 한 이유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0018018>
 11) 피고발인 차광열이 최대주주로 있는 차바이오텍은 2015. 11. 1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태반줄기세포 유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CB-AC-02’에 대한 임상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 11. 13.자 의학신문 기사 “태반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승인”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5576
 12) jtbc 2016. 11. 18.자 방송 “차병원, 현 정부서 지원금, 연구승인... 배경에 최순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8816

8) jtbc 2016. 11. 11.자 방송 “복지부 과장 4개월만에 교체됐는데... 차병원 밀어주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4300&fcode=PR10000403

5) 소 결 -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 후 부정처사의 혐의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자신에게 무상 줄기세포 기술을 하고 각종 안티에이징 치료를 받아 왔던 차병원그룹과 관련하여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막대한 국고지원과 숙원사업 관련 규제 폐지, 차병원이 개발 중인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시험 완화조치들은 결국 수뢰후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청와대 의약품 구입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횡령 혐의

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청와대 의약품 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764건의 의약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와대는 2015년 4, 11, 12월에 녹십자웰빙의 태반주사 라이넥을 150개 구입하고, 2014년 6월에는 태반주사인 멜스몬 50개를 사고, 소위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과겐씨 주사약을 두 차례에 걸쳐 100개 사고, 마늘주사(푸르셀타민 주사약) 50개, 백옥주사(루치온 주사약) 60개를 구입했습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 등을 구매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¹³⁾. 이 밖에 타미플 주사 같은 비타민 주사약 9종 1080개, 이런 주사에 타서 쓰는 무기질제제 주사약 셀레나제티프로 주사약을 70개를 구

입했으며, 이들 주사제는 피로 해소나 잔주름 개선용으로 쓰이는데 구매액만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마취제 180개, 단백질 아미노산 주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¹⁴⁾.

2) 그런데, 아래 박스 안의 의약품들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미용 목적의 의약품이거나 성형수술시 필요한 마취제들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입니다. 동 의약품의 구입과 관련한 의료법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위 의약품들은 모두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용도에 소요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청와대 예산으로 소비되어서는 아니되며, 위 피고발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의 피부관리, 성형용 약재, 심지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도 국고로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명백한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가 있음이 분명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 <p>①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중 2015년 4, 11, 12월에 녹십자웰빙의 태반주사 라이넥 150개 - 2014년 6월에는 태반주사인 멜스몬 50개 구입 -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과겐씨 주사약을 두 차례에 걸쳐 100개 구입 |
|--|

13) 경향신문 2016. 11. 23. 보도 “[단독]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11230717001

14) 중앙일보 2016. 11. 23.자 보도 “청와대, 태반, 감초, 백옥 등 주사제 1500개 구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61344>

- 마늘주사(푸르셀타민 주사약) 50개
 - 백옥주사(루치온 주사약) 60개 구입
- ②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60) 및 팔팔정(304) 364개 구매
: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실제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음.
- ③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마취제 180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백질 아미노산 주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옴.

마. 피고발인 김기춘의 줄기세포 시술 관련 사후수뢰죄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정권 말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바 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정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인 2015년 3월부터 차움의원을 다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줄기 세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¹⁵⁾.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곳은 TCC[도쿄셀클리닉(일본차병원)입]인데 비용과 관련해서는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4분의 1만 지불했다' '50% 가량 할인' 받았다는 것으로 차병원 측은 말을 바꾸고 있으나, 적어도 지불한 금액이 일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김기춘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차병원그룹으로부터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또는 적어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 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청탁 건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의 부정행위를 분담하였을 것이 넉넉히 추단되는

바, 이와 같은 조치와 이로 인한 차병원 그룹이 누린 혜택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그의 직무와 관련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줄기세포의 가격과 김기춘이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무에 관하여 사후에 제공 받은 뇌물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위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형법상의 사후수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피고발인 김상만의 의료법 위반 행위

1) 피고발인 김상만은 2010년부터 차병원 계열 차움병원에서 근무하며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상만은 당시 차움 병원 원장이던 이정노(차병원 이사장 차경섭의 사위, 차병원그룹 회장 차광렬의 매형)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위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2013년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 진료시 '대리처방'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움 병원의 최순실, 최순득 차트에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 5개 이름으로 기록이 있었으며, 당시 처방내역은 정맥영양주사입니다. 고발의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한 신문과의 통화에서 "차움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김상만씨가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에게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니 정맥영양주사 처방과 관련해 '청', '안가' 등이 적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청', '안가' 등 박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는 모두 15개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¹⁶⁾. 피고발인 김상만은 2014년 2월부터는 차움병원을 그만두고 녹십자 아이메드 의원(녹십자 검진센터)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5) jtbc 2016. 11. 17.자 방송 "[단독]김기춘, 차움서 줄기세포 치료... VIP 대우 받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8501&fcode=PR10000403

16) 한겨레 2016. 11. 14.자 보도 "최순실 담당의, '청'적은 대리처방 의혹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 의뢰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0197.html>

2) 피고발인 김상만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자문의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후 대리처방한 약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가져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전 의료정책과장)은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김상만 원장)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청와대에 가져가 주사를 놓았다”며 “규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75일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
니다¹⁷⁾.

5) 소 결

이상과 같은 점에서 피고발인 김상만은 의료법위반(대리처방)의 혐의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며, 한편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청와대에 반입된 의약품 중 다수의 부적절한 약품들의 반입과 관련하여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사. 피고발인 김영재의 의료법 위반 행위 등

1) 피고발인 김영재는 일반의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표방하여 왔으며, 성형외과계에서는 ‘리프팅 기술’ 이라고 하여 피부조직 안에 금실을 넣어서 피부가 동안처럼 보이게 하는 ‘안티에이징 성형술’ 분야가 있는데 위 사람은 금실을 개발한 특허를 갖고 이와 같은 기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영재는 피고발인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
통령

을 알게 되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기술’의 일종인 실을 이용한 안면 성형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박 대통령에 대하여 차명 처방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가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기술을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대
가 지급관계는 어떠한가를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피고발인 김영재 및 그의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외 진출 지원 지시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4. 2월경 조원동 전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위 피고발인의 성형외과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조원동 수석이 관련 해외진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피고발인 김영재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였으나 워낙 영세하여 해외 진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하였고, 조 수석 역시 그러한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가 미움을 사서 사실상 경질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및 대표와 그 집안 역시도 미움을 받아서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조사와 압력을 받고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컨설팅업체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JTBC가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¹⁸⁾.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 무리하게 개입하였을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17) 서울신문 2016. 11. 16.자 보도 “박대통령 ‘대리 처방’ 의사 75일 자격정지... 태반 주사도 포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7010017&wlog_tag3=naver

18) jtbc자 2016. 11. 8.자 보도 “해외진출 도와라... 병원 지원 당시 경제수석 나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36&fcode=PR10000403

3) 피고발인 김영재는 그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존 제이콥스, 대표 박휘준 - 김영재의 매형)의 제품을 청와대 명절용 선물로 납품하는 거래[2016년 청와대 설 선물용 화장품(제이프라스 로얄 노미네이션)]를 수의계약으로 성사시켰다고 합니다¹⁹⁾. 위 회사는 뚜렷한 해외판매 실적등이 없었으나, 장충동 신라면세점(2016년 7월), 명동 신세계면세점(2016년 5월) 등에 입점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피고발인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3차례 동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²⁰⁾(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2015년 9월 중국, 2016년 5월 아프리카, 프랑스)

4) 피고발인의 혐의 관련

현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피고발인 김영재의 혐의는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정도이나, 위와 같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위 피고발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2014년 2월 이후 2년 여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발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면부 성형(안티에이징)’ 과 관련한 일체를 관장하면서, 그 비용 역시 사실상 무상 또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제공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뇌물수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루어진 진료내역들과 대가 지급관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규명함으로써 관련 책임자

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의 유력 대선 후보 겸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획방지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관련 성형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와 그의 업체를 지원하여 주는 행위를 한 의혹, 나아가 사적 의약품을 청와대 예산으로 부당집행하는 횡령 의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고발인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챙긴 파렴치한 자이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리거나 호가호위하는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박대통령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직의 청렴성에 씻을 수 없는 오욕과 상흔을 남겼음은 물론이고, 국민 일반의 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분야정책마저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의료업계의 이익에 치우쳐 국가정책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19) jtbc 2016. 11. 8.자 보도 “[단독] 최씨 친분 성향의 ‘순방 동행’... 청와대 납품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37&fcode=PR10000403

20) jtbc 2016. 11. 8.자 보도 “[단독] 최씨 친분 성향의 ‘순방 동행’... 청와대 납품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37&fcode=PR10000403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고발합니다.

첨부자료

1. 참고자료 1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통령의 시크릿’편 프리뷰(2016.11.19.)
2. 참고자료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바이오 7대 강국 도약”(2016.5.18.)
3. 참고자료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7년 만에 승인”(2016.7.11.)

2016. 11. 29.

고발인 안 진 결 (인)

김 남 희 (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